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3.12.
제 출 자 : 구미시장

1. 개정사유

-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매각대금 잔액의 이자율 및 대부료 연체요율을 인하하고,
-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7788호, 2002. 11. 29)에 따른 조례 개정.
- 지방청사 표준면적기준이 시달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 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및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때의 이자율을 각각 인하 조정하여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제23조)
 -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잔액(10년이내) : 5% ⇒ 4%
 -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잔액(5년이내) : 8% ⇒ 6%
-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농경지외 영리목적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제26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체이자율 차등인하 및 연체료 부과기간 상한 설정(제31조)
 - 연체료 부과기간 : 납기일로부터 60월
 - 연체이자율
 - 1월 미만 : 연 12%
 - 1월이상 3월미만 : 연 13%,
 - 3월이상 6월미만 : 연 14%
 - 6월 이상 : 연 15%
- 청사등의 설계시 지방청사 표준면적기준의 시달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제48조)

3. 참고사항

- 도 세정 13330-10076(2003. 1. 8)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
- 도 세정 13330-12116(2002. 8. 23) 지방청사 설계 표준면적 산정기준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 제목을 “사용·수익허가”로 하고, 동조 본문중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를 “명시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허가조건

제23조제1항중 “잔액에 5퍼센트”를 “잔액에 4퍼센트”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잔액에 연 8퍼센트”를 “잔액에 연 6퍼센트”로 한다.

제26조 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리목적(농경지 제외)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의2 제4항중 “영 제92조의3”을 “영 제74조”로 하고, “세입세출 예산외 현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하며,”를 “교환차액을”로, “연 15퍼센트의 연 체료”를 “영 제100조제6항 각호의 요율에 의한 연체료”로, “고지하여야 한다.”를 “고지하되,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기간은 영 제100조제6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제34조의2중 “영 제102조의4”를 “영 제102조의5”로 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청사등의 설계) ①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영제30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50억원이상인 청사등 공용·공공용 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3조제1항·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③(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적용례) 제25조에 의한 대부료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분부터 적용한다.

④(연체요율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31조제1항의 대부료등의 연체요율 및 연체료 부과대상기간은 이 조례를 공포한날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별표]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

1. 시의 본청

가.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단위:㎡)

구 분 기관별	기관장실	부기관장실	실·국장실	실·과장실	담당또는 계 장	직 원
시 본 청	99	56.16	38.88	17.92	7.65	7.2
읍 청 사	33	17.92	-	17.92	7.65	7.2
면 청 사	33	14.80	-	-	7.65	7.2
동 청 사	23	14.80	-	-	7.65	7.2

나. 부속공간 면적

(단위:㎡)

실 명		설 계 기 준					비 고
회 의 실 (사용인원)		24명 미만	25~49명	50~99명	100~149명	150~199	200명이상시 면적=0.8㎡× 사용인원
		4~2.4㎡/인	2.6~1.5㎡/인	2~1.2㎡/인	1.6~1㎡/인	1.2~0.9㎡/인	
상황실	시 본 청	2.64×(과장급 이상 수 + 동장 수)					
서비스 및 동선 부분	화장실	100명 미만		100명~200명		200명 이상	기 타 부 분 을 포함하여 기 준층 면적의 27%~33%
		0.43㎡ / 인		0.40㎡ / 인		0.33㎡ / 인	
	엘리베이터	(12.87~19.6㎡)×대수					
식당		1.63㎡×공무원 수 × 0.3					
휴게실		2.0㎡×공무원 수 × 0.15					
민원실		{(6.55㎡×민원담당공무원 수)×1.1}+{(0.13㎡~0.2㎡×민원인 수 ×0.5)}					민원인 공간 확장 가능
숙직실	1인		2 ~ 3인		4인이상		
	15.12㎡/인		11.52㎡/인		8.64㎡/인		
자료실		(0.3~0.4㎡)×공무원수					
창 고		0.72㎡/인~0.85㎡/인					
전산실		9.79㎡×담당직원 수 × 1.2					
민방위대피시설		개소당 660㎡ 이상					평시 총무시 설로 이용

다. 설비관계 면적

(단위:㎡)

실 명		설 계 기 준					
공조기계실	연 면 적	~3,000	3,000~7,500	7,500~13,000	13,000~18,000	18,000~23,000	23,000~
	연면적대(%)	4.5~7.0	4.0~6.0	3.5~4.5	3.0~4.0	2.5~3.5	2.3~2.8
충장비실	사무공간	500㎡		800㎡		1,000㎡	
	충장비실	6.6㎡		8.4㎡		10.2㎡	
주장비실	사무공간	~1,000	1,000~4,000	4,000~8,000	8,000~12,000	12,000~16,000	
	주장비실	14	37	74	111	149	
	사무공간	16,000~20,000	20,000~24,000	24,000~28,000	28,000~32,000		
	주장비실	186	223	260	297		

라. 공용면적(로비·복도·계단) : [(직무면적 + 부속공간면적 + 설비관계면적) × 30 ~ 40%]

2. 시의회 청사

가. 시의회

(단위:㎡)

구 분		실 명	면 적 기 준	비 고	
의 원 실	a	의 장 실	집행기관장실 면적 준용		
		부의장실	집행기관 부기관장실 면적 준용		
		위원장실	집행기관 실·국장실, 실·과장실 면적 준용	시 위원회 수 : 3개	
회 의 실	b	본회의장	의원 수 × 5 + 방청객 수* × 1.5㎡이상		
		회 의 실	의원 수 × 3.3㎡	면적범위내에서 적절한 규모의 분할	
		위원회실	의원 수 × 8.2㎡	위원회 수 : 3개	
부 속 공 간	c	사무국장실		38.88 ~ 64.0㎡	
		사 무 실		직원 수 × 7.2㎡	
		자료실 및 도서실		198 ~ 297㎡	
		대기실	의 원	의원 수 × 2.5㎡	
			기 자	50㎡	
			운전기사	운전기사 수 × 1.8㎡	
	d	휴게실	의 원	의원 수 × 2㎡	
			직 원	직원 수 × 2㎡	
			방청객	방청객 수* × 2㎡	
		당 직 실		2인실 기준 15㎡	
		화 장 실		시 : 45~47㎡	
		기 타		예비실(50㎡)을 1개소이상 확보	창고 / 예비실 등
연계공간		로비·복도·계단	(a + b + c) × 30 ~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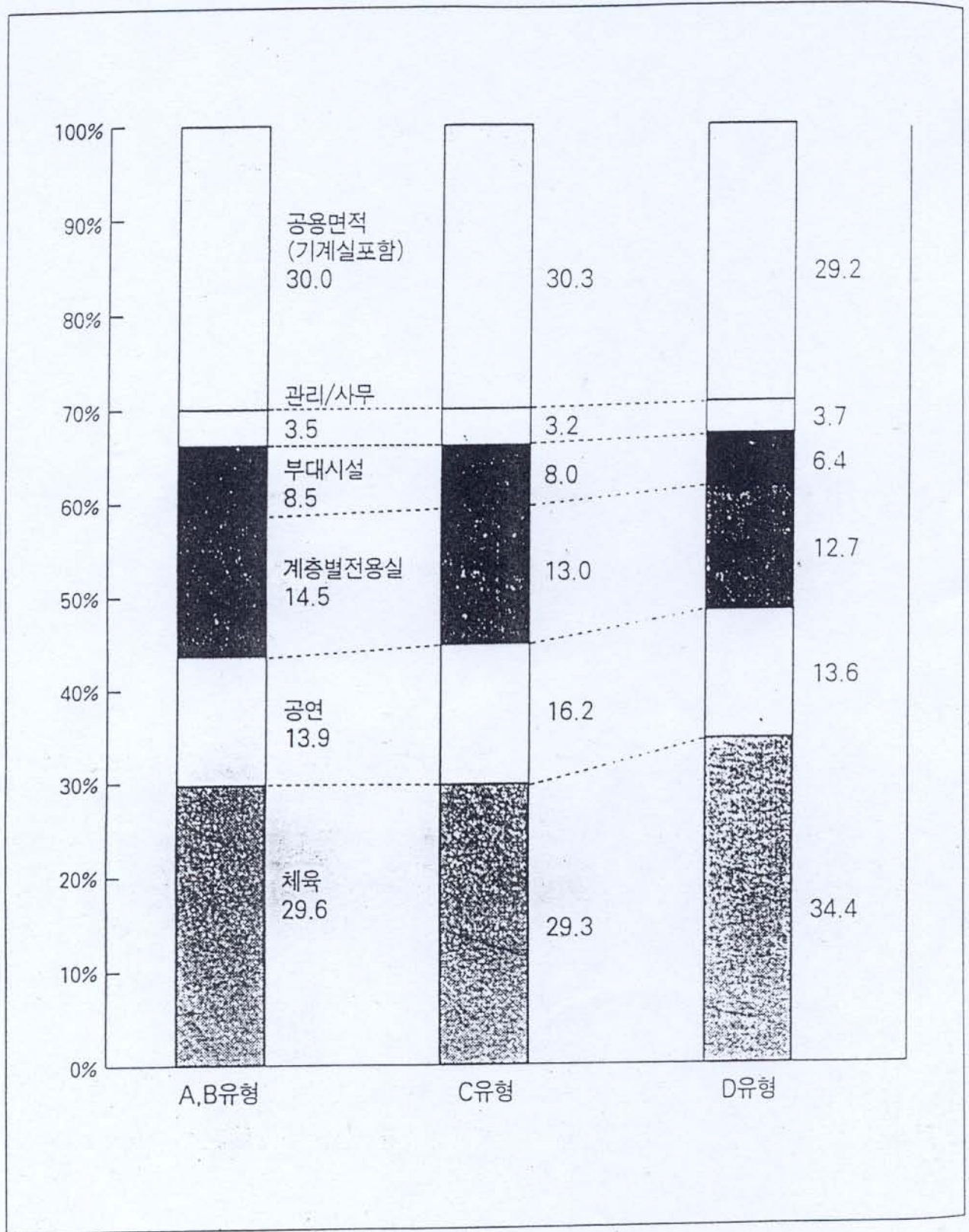
* 방청객 수 = 인구 수 × 0.000015 + 50

3. 시 종합회관

가. 인구규모별 설계유형

유형	인 구	수 용 시 설 설 정
A	30~50만명	- 농구, 배구, 핸드볼경기 등을 다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체육관을 주기능으로 하고, 보조기능으로서 6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마련한다. - 체육시설은 고정석 1,200석 및 가동석 400석의 관람석을 확보하고 대규모 집회 행사시에는 경기장에서 대략 3,8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집회나 행사를 위해서 경기장내에 무대장치를 마련한다. - 600석 규모의 전문적인 공연장을 위하여 무대부대시설 및 분장실, 연습실 그리고 공용공간인 로비, 라운지 등의 시설을 충분히 고려한다. - 각 계층별 전용실 및 공용시설, 식당, 매점, 휴게공간 등의 각종 시설공간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종합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B	15~30만명	- A유형과 대등한 시설을 구비하되 각 공간의 규모면에서 A유형의 약 83% 정도가 되도록 각 실을 계획한다. - 농구, 배구, 핸드볼경기 등을 다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체육관을 주기능으로 하고, 보조기능으로서 5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마련한다. - 체육시설은 고정석 1,000석 및 가동석 400석의 관람석을 확보하고 대규모 집회 행사시에는 경기장에서 대략 3,0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집회나 행사를 위해서 경기장내에 무대장치를 마련한다. - 500석 규모의 전문적인 공연장을 위하여 무대부대시설 및 분장실, 연습실 그리고 공용공간인 로비, 라운지 등의 시설을 충분히 고려한다. - 각 계층별 전용실 및 공용시설, 식당, 매점, 휴게공간 등의 각종 시설공간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종합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C	10~15만명	- 수용하는 체육성격은 농구 및 배구경기이며 고정석 수태드의 규모를 다소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공연장 규모는 400석이나 A유형보다 각종 부대시설의 면적이 축소, 조정될 수 있다. - 전체적으로 규모에 따라 각 시설별로 수용개설을 줄이거나, 규모의 축소가 가능하나 규모 축소에 따른 각종 활동의 위축 등은 될수 있으면 배제될 수 있도록 시설계획을 조정함이 바람직하다.
D	10만 미만	- 배구경기 위주로 체육경기장 규모를 축소할 수 있으며, 공연장의 경우 200석규모 정도의 소공연 전문 성격으로 마련하여 공연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한다. - 공연 및 체육시설의 면적을 상당부분 감소시키고, 계층별 전용실 및 관리, 사무시설을 수용인원에 따라 부분적으로 면적이 조정 가능하나, 대부분의 시설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전체규모가 소규모이나 시민체육이나 전문적인 공연 등으로 이용빈도의 증대와 활발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각 유형별 면적 배분비



다. 유형별 면적기준

(단위:㎡)

구분	A유형 (인구30~50만)	B유형 (인구15~30만)	C유형 (인구10~15만)	D유형 (인구10만미만)	비 고
순 면 적(Net Area)	6,600	5,494	3,955	2,313	
공용면적(기계실포함)	2,827	2,365	1,724	958	· 기능별 공간 연결시 발생되는 공용면적은 ±5~10%를 별도로 고려한다. · 주차공간은 제외된 면적임
연 면 적(Gross Area)	9,427	7,851	5,679	3,341	
N / G 비	70.0%	70.0%	69.6%	69.2%	

1) 공연시설

(단위:㎡)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극 장	객 석	480	400	320	160
	무 대	290	240	240	120
	연습실	55	55	50	30
	분장실(남,여)	41	35	24	10
	분장실전용화장실	11	9	7	3
	악 실(1)	14	12	10	15
	악 실(2)	14	12	10	-
	소 계①	905	763	661	338
부 속 시 설	도구비치창고	216	180	120	40
	도구반입실	33	-	-	-
	영 사 실	48	40	30	20
	음 향 실	36	30	30	20
	기기실(무대)	36	30	25	-
	조 명 실	24	20	20	20
	측벽투광실	12	12	12	-
	방송중계실	12	10	10	-
	소 계②	417	322	247	100
합 계	계 ①+②	1,322	1,085	908	438
	공용부분	881	723	605	292
	합 계	2,203	1,808	1,513	730

2) 계층별 전용시설

(단위:㎡)

구 분	시 설 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아동실	아동실(1)	68	60	30	30
	아동실(2)	68	60	30	-
	부속창고	6	4	4	4
	소계⑤	142	124	64	34
청소년실	청소년실(1)	60	50	50	50
	청소년실(2)	40	35	-	-
	소계⑥	100	85	50	50
노인실	노인실(남)	60	50	50	30
	노인실(여)	60	50	50	30
	휴게실	36	30	30	-
	주 방	8	6	-	-
	건강상담실	30	24	10	-
	소계⑦	194	160	140	60
부녀실	부녀실(1)	120	108	50	50
	부녀실(2)	120	108	50	50
	부녀실(3)	35	35	35	-
	소계⑧	275	251	135	100
공 용 시 설	강의실	75	60	60	60
	회의실(1)	90	70	70	70
	회의실(2)	90	70	70	35
	회의실(3)	70	70	-	-
	회의실(4)	40	35	-	-
	다목적실	174	144	120	-
	주 방	18	14	8	-
	기자재창고	18	14	12	-
	전시코너	36	30	-	-
	소계⑨	611	507	340	165
	계⑤~⑨	1,322	1,127	729	409
합 계	공용부분	712	607	373	220
	합 계	2,034	1,734	1,122	629

3) 부대시설

(단위:㎡)

구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전시 시설	전시실	216	162	108	54
	작업실	43	35	23	12
	창 고	43	35	23	12
	소계⑩	302	232	154	78
도서 시설	도서실	308	257	147	100
	소계⑪	308	257	147	100
식당 휴게 시설	식 당	85	70	70	-
	주방 및 창고	38	32	32	-
	휴게실	82	70	46	28
	소계⑫	205	172	148	28
합계	계 ⑩~⑫	815	661	449	206
	공용부분	349	283	192	88
	합 계	1,164	944	641	294

4) 체육시설

(단위:㎡)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경기장	경기장	1,344	1,104	714	646
	갱의실(남)	27	21	21	12
	샤워실(남)	27	21	21	12
	갱의실(여)	15	12	12	6
	샤워실(여)	14	12	12	6
	부속실(1)	72	60	40	20
	부속실(2)	48	40	40	30
	대기실	26	22	22	15
	장비실	145	120	75	60
	무대(집회용)	240	200	151	95
	트레이닝실 (소체육실)	120	100	50	-
	소계③	2,078	1,712	1,158	902
관람석	관람석	720	600	480	210
	상부발코니	-	-	-	-
	소계④	720	600	480	210
합 계	계③+④	2,798	2,312	1,638	1,112
	공용부분	700	578	410	278
	합 계	3,498	2,890	2,048	1,390

5) 기타시설

(단위:㎡)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사무실	관리사무실	87	72	51	22
	관장실	64	64	64	30
	응접 및 탕비실	26	26	26	26
	소회의실	32	27	20	10
	숙직실	12	10	10	10
	안내인방송코너	12	10	10	-
	직능단체사무실(1)	55	50	50	50
	직능단체사무실(2)	55	50	-	-
	소계⑬	343	309	231	148
합 계	계⑬	343	309	231	148
	공용부분	185	166	124	80
	합 계	528	475	355	228

4. 보건소

(단위:㎡)

구분		실 명	면적기준
			통합시보건소
진료 활동	a	접수/수납	13.86
		의무기록창고	10.89
		대기공간	48.00
		약국조제실	13.86
		약국창고	13.86
		일반진찰실	53.46
		처치실	17.80
		치과진찰실	27.54
		치과장비실	2.70
		치과용암실	2.16
		소독실	8.91
		예방접종실	17.82
		소아놀이실	9.90
		수유실	7.92
		화장실	31.68
		장애자용 화장실	4.86

보건 사업	b	결핵관리실	17.82
		상담실	35.64
		방사선실	81.66
진료 지원	c	임상검사실	65.34
사 무 부 문	d	소장실	읍·면장실 면적 준용
		전실(탕비실)	9.90
		소회의실	17.82
		사무실	직원 수 × 7.2m ²
		다목적실	144
		창고	59.4
		여자휴게실	40
		당직실	13.86
		화장실	17.82
설비	e	기계실 및 전기실	66
연계공간		로비·복도·계단	(a+b+c+d+e) × 30~40%

5. 농업기술센터

(단위:m²)

구 분		실 별	설계기준	비고
업무 공간	a	기관장실	읍·면장실 면적 준용	
		사무실	직원 수 × 7.2	
소요 공간	b	조직배양실	82.5 내외	
		종합검정실	72.6 내외	
		가축질병진단실	36.3 내외	
		꽃가루은행	99 내외	
		여성기능교육실	66 내외	
		화상정보시스템	66 내외	
		농기계수리지원센터	330 내외	
		예비실	1개소(50) 정도 확보	
공용 공간	c	휴게실	직원 수 × 2	
		화장실	청사기준에 준하여 확보한다	
연계공간		로비·복도·계단	(a + b + c) × 30~40%	

* 소요공간(b)의 경우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실의 종류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 표

현행	개정안
제12조(관리 및 처분) ① (생략) ②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재산의 규정을 따른다.	제12조(관리 및 처분) ① (생략) ② <삭제>
제15조(사용·수익허가조건)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1.~8. (생략) <신설>	제15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8. (생략) 9. 허가조건
제23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6. (생략) ②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3. (생략) ③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5. (생략)	제23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 - - - - - - - - - - - - - - - - - - 잔액에 4퍼센트의 - - - - - - - - - - . 1.~6.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잔액에 연 6퍼센트의 - - - - - - - - - - . 1.~3.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잔액에 연 6퍼센트의 - - - - - - - - - - . 1.~5.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연 15퍼센트의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③(생략)	영 제100조제6항 각호의 요율에 의한 연체료를 - - - - - - - - 고지하되, 연체료부과대상이 되는 기간은 영 제100조제6항의 기간을 초과할수 없다.----- ②·③(현행과 같음)
제34조의2(신탁의 종류) 영 제10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 관리신탁·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34조의2(신탁의 종류) 영 제102조의5- - - - -
제48조(청사의 설계) 청사설계의 기준 및 규모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8조(청사등의 설계) ①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기구·인력의 증가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2. 지역사회에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수평·수직 증축이 가능한 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비상시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지하시설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현행	개정안
<u>5. 철근콘크리트 및 냉·난방시설 완비</u> <u>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u> <u>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 설정</u>	<u>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u> <u>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u> <u>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u> <u>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u> <u>③영제30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50억원 이상인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u>